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 . (제 회)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출자	국무위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출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인증제도 적합성 평가 결과, ‘도농교류 교육과정 인증제도’의 실효성 미흡 등의 사유로 폐지가 결정(‘22.12월)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도농교류 교육과정 인증제와 관련된 조항 삭제 및 문구 수정(안 제17조 수정 및 제17조제1항 내지 제7항, 제19조, 제28조제4항 삭제)
- 나. 자구수정(안 제20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8조제4항)
- 다. 교육과정 인증 관련 경과조치 마련(안 부칙 제2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 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을 “다음 각 호의 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 등”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1. 도농교류 또는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2. 농어촌체험지도사 교육과정
3. 농어촌마을해설가 교육과정

제19조를 삭제한다.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증받은”을 각각 “제17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8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중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 이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도농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은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7조(도농교류 교육과정의 인증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도농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어촌주민과 도시민에게 <u>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u>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p> <p><u><신 설></u></p> <p><u><신 설></u></p> <p><u><신 설></u></p> <p>②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거나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u></p> <p>1. <u>도농교류 또는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u></p> <p>2. <u>농어촌체험지도사 교육과정</u></p> <p>3. <u>농어촌마을해설가 교육과정</u></p> <p>③ <u>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이 교육시간, 교육</u></p>	<p>제17조(도농교류 교육과정의 인증 등) ① -----</p> <p>-----</p> <p>-----</p> <p>-----</p> <p>-----</p> <p>----- <u>다음 각 호의 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 등-----.</u></p> <p>1. <u>도농교류 또는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u></p> <p>2. <u>농어촌체험지도사 교육과정</u></p> <p>3. <u>농어촌마을해설가 교육과정</u></p> <p><u><삭 제></u></p> <p><u><삭 제></u></p>

과목, 교육시설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하여 인증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삭 제>

⑤ 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아니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삭 제>

⑥ 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삭 제>

⑦ 인증 신청절차 및 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19조(인증의 취소) ① 시·도지사는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삭 제>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7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0조(도농교류 및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 등의 활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관광농원사업 등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도농교류 및 농어촌지역개발활동을 지도·자문하기 위하여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증받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자를 전문인력으로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을

제20조(도농교류 및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 등의 활용) ① ---

----- 제17조제1항에 따른 -----

② -----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체험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이용자의 안전관리, 농작물 및 환경·경관 보호 등 체계적인 농어촌체험을 지도하기 위하여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증받은 농어촌체험지도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농어촌체험지도사로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촌을 체험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농어촌마을을 안내하고, 농어촌마을 및 주변 지역사회의 역사·전통문화 등을 체계적으로 해설·교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증받은 농어촌마을해설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농어촌마을해설가로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 (생략)

제28조(과태료) ① ~ ③ (생략)

④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교육프로그램

----- 제17조제1항
에 따른 -----

-----.

③ -----

----- 제17조제1항에 따른

-----.

④ (현행과 같음)

제28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또는 교육과정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④ ----- 제3항-----

-----.

< 의안 소관 부서명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	
연 락 처	(044) 201 - 1591